

'23년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 대상기업 공모(제조업)

1

사업 목적

-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스마트 안전 신기술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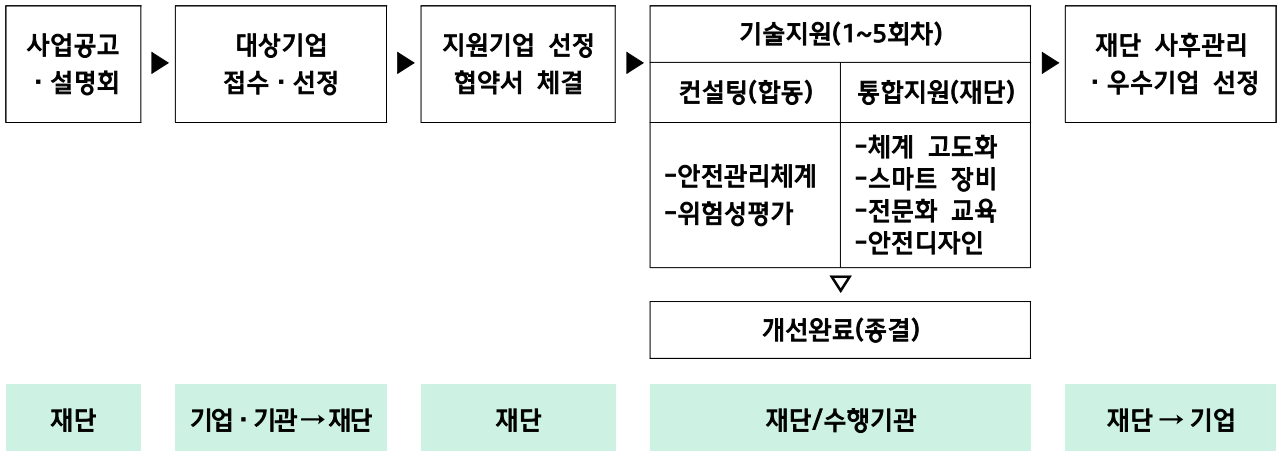
사업 개요

- 사업주관 : 산업안전상생재단 ※ 재단 지원사업은 100% 무상지원 되며, 컨설팅 결과는 재단 외에 비공개 됩니다. 또한,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고용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거나 신고하지 않습니다.
- 지원대상
 - 중소기업기본법 상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사업장(중기법 시행령 별표1, 설립 1년 이상)
 -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·철강업 등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
- 지원혜택 : 기업당 최대 5,000만원 상당 지원
- 추진방향 : 소규모 중대재해 취약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과 통합지원체계 (체계 구축 집중지원,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및 맞춤형 안전교육 등)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 제공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
- 지원 내용

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		세 부 내 용
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	체계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지원 •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
	위험성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 유해위험 설비·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진행 • 위험성 감소대책 제시 및 개선현황 추적관리
기술 지원	안전관리체계 구축 집중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개선대책 수립 지원 • 사업장 니즈 반영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지원
	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점검 진단에 따라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기업 도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게차 AI인체감지 충돌방지시스템, 스마트 개인장구 등
교육·정보 지원	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경영시스템, 위험성평가, 중처법 등
	안전정보 및 자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전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 발간(월 1회), 포스터 배포(2회)

3

사업 수행 절차



- 산업안전상생재단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 검토 후 지원대상 기업 선정
-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재단과 수행기관이 합동점검 실시하며, 기업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방문 횟수를 결정하여 최대 5회 다회성 지속관리
- 방문주기는 약 1개월 원칙이나, 재단 일정, 사업장 요청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- 회차별 사업수행 세부절차는 [붙임2] 참조

4

참여 신청

- 신청기간 : 연중 상시접수
- 신청방법 : 산업안전상생재단 홈페이지(www.ispf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- 제출서류
 - ①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(개인정보 제공·조치 동의서 포함)
 - ② 기업 소개자료(조직도 포함, 양식 자유)
 -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④ 산재보험완납증명서
 - ⑤ 재해율 확인서
 - ⑥ 중소기업(소상공업) 확인서 (#붙임4 참조)
 - ⑦ (해당시) 위험성평가 인정서,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통지서
 - ⑧ (해당시)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(ISO45001/KOSHA-MS)

※ 첨부서류 누락시 선정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필히 첨부요망
- 접수문의 : 산업안전상생재단 사업지원팀
(전화 02-742-7016~22 / 이메일 : onestop@ispf.or.kr)

5

선정 심사

- 심사기간 : 23년 9월 중 (예정)
- 선정결과 발표 : 선정심사 후 재단 홈페이지에 결과발표 및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
- 선정기준

평가 지표	평가 항목
1. 사업장 규모	상시 근로자수 (100인 미만)
	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(중기법 시행령 별표1 기준)
2. 산업재해 발생현황 (최근 3년, '21~23년)	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	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
3. 사고다발 위험설비 보유현황 (제조업 12대 사망사고 기인물)	주요 기인물* 보유 사업장 *크레인/지게차/컨베이어
	그 외 기인물* 보유 사업장 *지붕/사다리/화물운반트럭/배합·혼합기/산업용로봇 등
4. 사고다발 위험업종 해당현황 ('21년 제조업 사고다발업종)	사고다발 5대 업종* *금속제련업, 선박 건조 및 수리업, 기계기구·금속·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,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,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
5.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(대상업종 13개/대상설비 5종)	제출대상 업종(전기계약용량 300kW이상) 및 대상설비(용해로, 화학설비, 환기설비 등) 보유사업장
6. 산재 취약근로자 보유현황	고령자(만55세 이상),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

6

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제한 조건
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
 - 사업 신청시, 유사 사업을 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
 - 사전 협의 없이 컨설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
 - 신청기업에 부도, 화의, 법정관리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재단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서류접수 후 접수사항 확인을 위해 상담 및 추가서류 요청이 진행될 수 있음

[붙임]

1. 2023년도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(제조분야) 1부.
2.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사업수행 세부절차 1부.
3.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 1부.
4.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 1부.

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산업안전상생재단 기술지원 사업장 및 사업주 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산업안전상생재단은 「산업안전상생재단 지원」 사업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3조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 목적

- 「산업안전상생재단 지원」 사업과 관련한 선정평가 및 사업 운영·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수집·이용할 항목

- 필수항목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소속, 직위, 전화번호, 휴대전화, E-mail 등)
사업장식별정보(사업장명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 등)

□ 보유·이용기간

- 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고,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
- 사업장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: 즉시 파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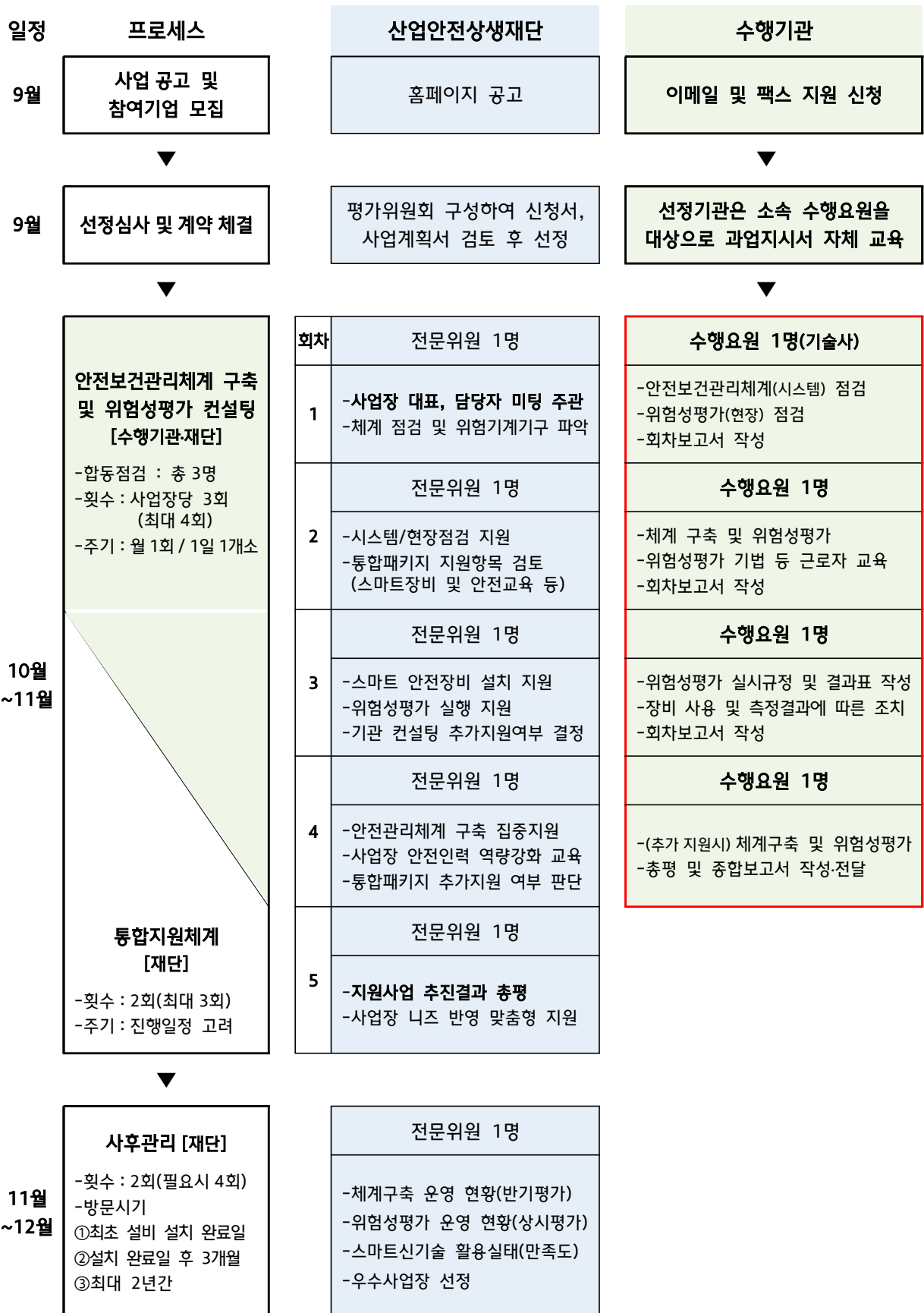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□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?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	개인·사업장 식별정보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
	사 업 장 명		
	사업주(담당자)		(서명 또는 인)
	2023년 00월 00일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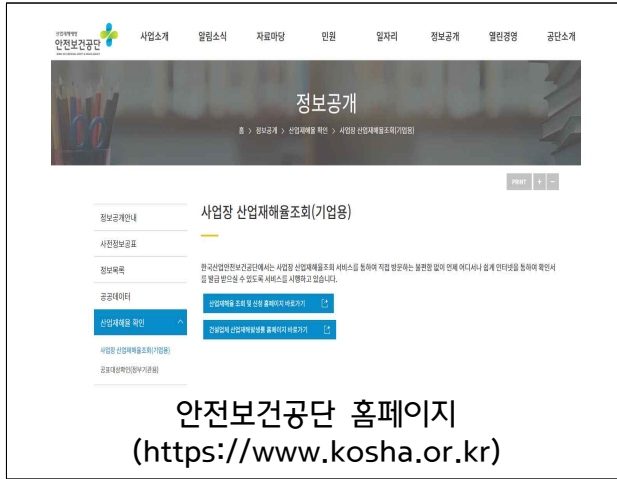
안전보건 통합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수행 세부절차



[붙임3]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

기업 재해율 확인서 발급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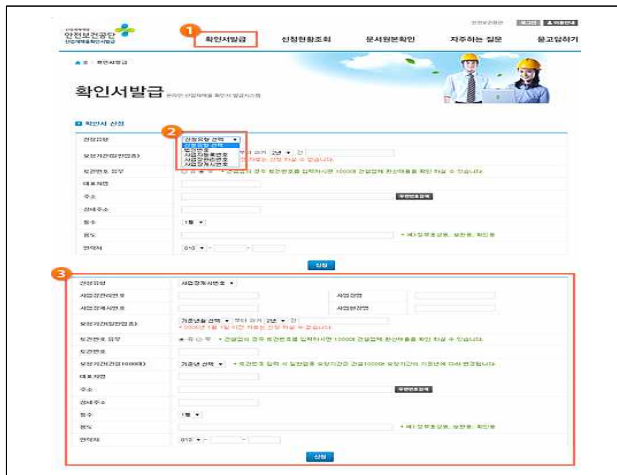
1.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통하여 조회시스템 페이지 이동 : [정보공개]-[산업재해율 확인]



2. 조회 시스템 기업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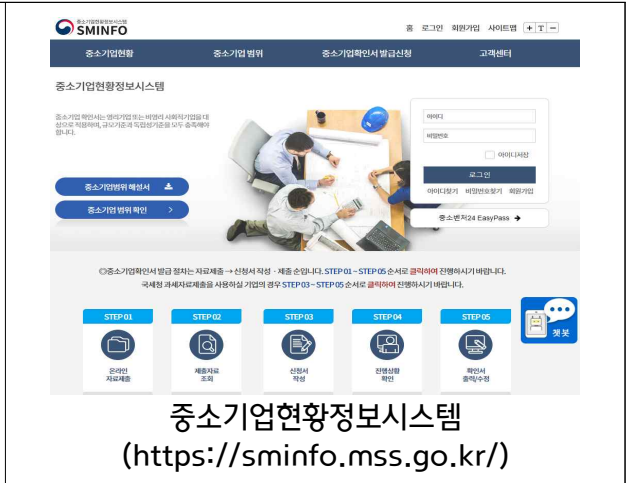
3. 확인서 신청 양식 작성 및 확인서 발급



[붙임4]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방법

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방법

1. 중소벤처24 홈페이지 통하여 현황시스템 페이지 이동 : [증명서 발급]-[중소기업 확인서 발급]



2. 현황정보시스템 기업 공동인증서 사용하여 로그인 및 제출서류 조회, 확인서 발급 신청



3.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

